

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54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정부기관 또는 장학 단체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장학금의 종류) 각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.

1. 교내장학금 :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
2. 국가, 외부단체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

제4조(지급대상)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
2. 수혜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
3.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5조(수혜기간)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석·박사 학위과정 4학기, 통합과정 8학기로 하며, 이를 초과할 수 없다.

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에 한하여 수혜기간을 초과하여 지급(연구등록금 포함)할 수 있다.

제6조(신청방법)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학과 또는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장학금 지급제한 등) ① 제3조각호의 장학금 지급은 동일 수혜기간내에 1인 1종에 한한다.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장학금을 수혜 받은 사람에게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외기관에서 지원하는 1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휴학자 및 학칙을 위반한 자
2. 징계 처분을 받은 자

제8조(장학생의 교체)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.

1. 중복수혜대상으로 해당 장학금을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
2.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한 경우

제9조(자격 상실)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상실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 (적용례)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2.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